

# 공 고

1. 예정된 처분의 내용: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해지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근거법령: 우편법시행규칙 제126조의 2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상 및 이용자
  - ①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이용자
  - ②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물이 월 30통에 미달한(실적없음) 이용자

사서함	이용자 성명
제80호	송*조

4. 게시기간: 2023. 11. 14 ~ 2023. 11. 28
5. 내용: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견있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내 우리국 우편영업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연락처: 042-250-7066, Fax: 042-256-9851, 메일: [hshan915@korea.kr](mailto:hshan915@korea.kr))

대 전 우 체 국 장